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327 발의연월일: 2021. 7. 2.

발 의 자: 백혜련·김남국·김병욱

김승원 · 김윤덕 · 김홍걸

문정복 • 민병덕 • 민형배

박성준 · 서영석 · 소병훈

양이원영 · 오영환 · 윤후덕

이학영 · 이해식 · 임종성

전용기 · 정성호 · 정정순

주철현 · 한준호 · 홍정민

의원(2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입원자의 대부분이 거동불편 중증환자로 자력대피가 곤란하고 다수의 노인요양시설이 복합건물의 상층부에 위치하고 있어 인명구조 활동에도 장애가 있어 화재 발생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됨.

이에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에 한해 강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하는 것을 간이 S/P설비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제1호).

법률 제 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 ① |
|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 | |
| 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 | |
| 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 | |
| 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 | |
| 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 | |
| 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 | |
| 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 | |
| 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 | |
| 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 | |
|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 <u>.</u> |
|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 |
|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 | |
| 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 |
| 기준을 적용한다. | <u>.</u> |
| 1. 다음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 | 1 |
| 로 정하는 것 | |
| 가. ~ 라. (생 략) | 가. ~ 라. (현행과 같음) |
| <u><신 설></u> | 마.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 2. ~ 3. (생 략) | 2. ~ 3. (현행과 같음) |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